

의안번호	2206508
의 퇴 인	최보운 의원
회 답 일	2024. 12. 23.
추 계 번호	24B59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 (장애인의 권익보호) 신설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2	안 제69조의3 (장애인의 시청 지원)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의2 (장애인의 권익보호)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9조의3 (장애인의 시청 지원) 신설	미대상: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에 관한 현행법 제26조제8항 및 제9항 ¹⁾ 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하위법령 ²⁾ 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시청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

2. 상세 사유

□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프로그램 출연 등을 지원(안 제3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개정안 시행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프로그램 출연 지원 등의 의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기준, 지원 대상·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1]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제고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30,916	29,818	35,468	32,774	30,064
아리랑국제방송지원	12,492	13,430	13,430	13,430	12,070
국악방송지원	6,370	6,470	6,456	5,842	5,258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7,841	7,057	6,352	5,034	6,272
지역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3,400	3,900	3,900	3,900	3,900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1,337	1,203	1,203	1,303	1,011
공동체라디오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200	200	200	—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맞춤형TV 보급)	12,461	13,568	15,718	20,176	21,87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